

# 익산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15.04.16.	제1호
개정	2015.09.17.	제2호
개정	2016.04.06.	제3호
개정	2017.04.19.	제4호
개정	2020.07.23.	제5호
개정	2021.02.09.	제6호
개정	2023.04.17.	제7호
개정	2023.12.14.	제8호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익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1길 27-38에 둔다.

## 제 2장 수업 연한, 학년, 학기,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조기진급,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5조(학년·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조(휴업일)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방학, 재량휴업일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 제2호~제6호의 휴가기간은 법정 수업 일수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를 실시한다.

③ 학교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 제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제)** 본교는 학급편제는 당해년도 학급배정에 의한다.

**제8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당해년도 학생 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 제 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평가, 수료와 졸업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 ① 본교의 교과는 도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외국어(영어), 통합교과, 안전한 생활,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 ②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라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또는 총론)' 및 전라북도의산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제10조(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 ② 교육부의 훈령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제시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결석과 학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확인된 여학생의 생리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③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현장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6.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④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비고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외가포함 직계존속)	5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학생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 자매	1	

### 제11조(평가)

- ① 평가는 교육과정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성적산출을 통한 서열화의 목적이 아닌 참학력 신장에 중점을 둔다.
- ② 학교장은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당해년도 익산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의거 하여 시행한다.

### 제12조(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 제 5장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취학과 취학 유예등

### 제13조(입학시기)

- ①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본교의 편입학의 시기는 본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4조(입학결정)** 본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학통지를 받은 아동과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전라북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의 배정과 학교장의 입학 허가로서 결정된다.

**제15조(만 5세아의 취학)** 본교의 만 5세 아의 취학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재취학)

- ①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재취학 하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사이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취학 아동은 학교장이 요구하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원 외 관리대상자,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④ 기타 자세한 업무 처리는 전라북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 제17조(전 · 입학)

-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읍 · 면 ·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 제8조(취학 유예 등)

- ① 초·중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보호자의 신청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①항, ②항에 따른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④ 취학의무의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 ⑤ 일정기간 외국에서 취학할 목적으로 그 보호자와 동반 체류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여권 사본 등을 갖추어 이를 처리한다.

#### 제1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 제 6장 조기진급과 조기졸업 등

### 제20조(조기진급 ·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연한의 단축은 1회(1년)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조기 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결정한다.

④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21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제21조의 1(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 · 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2 21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와 교육과정위원회에 속한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 회의 평가

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 · 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1조의 2(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 · 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1조의 3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위원회에 속한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21조의 3(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 기구)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 내에 조기진급 · 졸업 · 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의 1 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2조의 2 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과목 이수인정평가 소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의 4(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1조의 3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21조의 3 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 7장 체험학습 운영

**제22조 (체험학습)** ① 체험학습의 횟수와 시기 및 종류는 해당년도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실시 한다. 체험학습은 개인 교환학습, 단체 교환학습,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② 개인 교환학습의 인정절차, 인정기간 및 인정범위는 각호와 같다.

1. 개인 교환학습 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교환학교의 형편에 따라 1개월(4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실시 여건 변화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실시할 수 있다.
2.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방법, 또는 통학방법, 체험학습 간 중의 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개인) 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학교에 제출한다.
3. 재학 학교장은 희망학생(보호자)의 교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참고 자료 (개인) 교환학습 의뢰서와 교육과정 진도 상황표를 작성하여 희망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4. 위탁교육 실시 기관장은 교환학습 의뢰서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참고자료 (개인) 교환학습 승낙 통지서를 재학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팩스, 공문 등)
5. 재학 학교장은 위탁 교육에 대한 동의를 통보 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위탁 교육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및 준비물과 함께 보호자가 대동하여 위탁기관장에게 인계한다.
  - 가. 생활기록부 사본 1부, 또는 개인용 생활기록부 사본 파일 1부
  - 나. 교육과정 진도 상황표 1부
  - 다. 기타 학생 교육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 시는 동봉하여 송부함
  - 라. 학생 준비물 지침 확인 – 교과서, 학습장, 학용품 등
6. 체험학습 실시 중 해당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해당 학교장이나 보호자와 수시 전화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7. 체험학습 실시 후에는 (개인)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를 기록, 첨부하여 학생과 함께 원적학교에 인계한다.
8. 체험학습 기간이 종료되면 (개인) 교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단체 교환학습의 인정절차, 인정기간 및 인정범위는 각호와 같다.

1. 단체 교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희망학교, 기간, 숙식방법, 또는 통학방법, 체험학습기

간 중의 보호자명 등을 기재한 (단체) 교환학습 신청서를 재학학교에 제출한다.

3. 재학 학교장은 교환학습 신청서를 검토한 (단체) 교환학습 의뢰서와 교육과정 진도 상황 표를 작성하여 위탁 학교장에게 승인을 요청한다.

4. 위탁교육 실시 학교장은 교환학습 의뢰서를 검토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의뢰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참고자료 (단체) 교환학습 승낙(거부)통지서를 재학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팩스, 공문 등)

5. 재학 학교장은 위탁 교육에 대한 동의를 통보 받은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위탁 교육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 및 준비물과 함께 위탁학교장에게 인계한다.

가. 교육 과정 진도 상황표 1부

나. 학생의 특기사항이나 교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가 있을 시는 동봉하여 송부 (상담일지 또는 생활기록부 파일 복사본 1장 등)

다. 학생 준비물 지참 확인 – 교과서, 학습장, 학용품, 생활용품 등

6. 체험학습 실시 중 해당 학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는 체험학습을 중지하거나 보호자와 수시 전화 연락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7. 체험학습 실시 후에는 교환학습 활동 상황, 교육과정 진도 상황, 교환학습 기간 중의 평가 결과, 출석상황 등을 참고자료 (단체)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에 기록 또는 첨부하여 학생과 함께 원적 학교에 인계한다.

8.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단체) 교환학습 보고서를 재적 학교에 제출하고, 담임(학교)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④ 교외체험학습은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가.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은 학교에서 자율 설정 가능

나.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3.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하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4.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5. 교외 체험 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o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6. 교외체험 학습 시의 일과 운영

가. 가정의 애·경사가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 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나.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 돌아가신 분의 일 이어받기, 효도·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 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다. 기타 학부모가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부모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업무관리시스템에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체험학습 관련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제 8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제12조부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9조에 따라 의무교육단체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 제24조 (역할)

- ①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 ②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 ③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④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제25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의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외부위원에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 한다. ※ 위원회 외부위원 전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주의함.

#### 제26조(회의개최)

- ① 위원회는 제27조 ①~③항을 심의하거나, 제27조 ④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 장이 결정한다.
- ②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개최하여야 한다.(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③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제27조(회의 개의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②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8조(회의록 작성 등)

- ①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②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 제 9장 장애학생 차별 금지

#### 제29조(교육기관의 차별 금지)

-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 ④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28조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제공하여야 한다.
- ⑦ 학교장은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 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⑧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 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10장 수업료와 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30조(수업료와 입학금)** 교육기본법 제8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4항에 의거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31조(기타의 비용징수)

- ①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받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수익자 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1장 학생의 자치활동

**제32조(학생의 자치활동 보장)**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33조(학급 자치회)

- ① 학생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4학년 이상 학급마다 학급 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학급 자치회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34조 (전교 학생 자치회)

- ① 학급 자치회 기초 위에서 4학년 이상 학급인원이 참여하는 전교학생 자치회를 조직·운영한다.
- ② 전교 학생 자치회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기타 학생자치활동)** 학급·전교 학생 자치회 외의 학생자치활동은 적극 권장·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교육목적 및 학생 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 제 12장 학생의 포상 및 징계

### 제36조(학생생활지도)

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동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③ 학생 생활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의산초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 제37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 규정을 정한다.

### 제38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징계 기간 및 방법 등은 학생생활규정에 따른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출석정지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제 13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9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제

7항에 따라 「의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0조(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산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제 14장 학칙개정절차

### 제41조(학교규칙개정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학칙 개정안을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 제42조 (시행규칙)

- ①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② 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 15장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 제43조(흡연규정에 관한 규칙)

- ① 익산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담배 소지 및 흡연을 금지한다.
- ② 모든 교직원과 학교의 방문객에 대한 학교 구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 ③ 학교의 시설물, 학교행사, 학교의 출판인쇄물 등 학교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에서 담배 및 담배 흡연과 관련되는 일체의 홍보 행위를 금지한다.
- ④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익산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다.
- 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해 학교의 교사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제44조(기타 법령의 적용)** 이 학칙에서 제외된 사항은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2015.04.16.제1호)**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4월1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09.17.제2호)**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9월17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6.04.06.제3호)**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4월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7.04.19.제4호)**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4월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0.07.23.제5호)**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7월23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2021.02.09.제6호)**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2023.04.17.제7호)**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 **부 칙(2023.12.14.제8호)**

① (시행일)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학교의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